WIPO PCT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5 년 5 월 | 2025/05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PATENTSCOPE 소식

PCT 모니터링 기능

WIPO 의 글로벌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 에서 PCT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어, 재공개, 서지정보 업데이트, 국내단계 진입 자료, 그리고 이용 가능한 새로운 문서와 같은 중요 변경사항들에 대한 공개된 PCT 출원 모니터링을 일일이 직접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022 년 4 월 이후 공개된 모든 PCT 출원의 PCT 서지정보 탭에서 “모니터링하기”(Start Watching) 기능을 활성화하면 최대 20 건의 출원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PATENTSCOPE 사용자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help/en/users_guide.pdf

표준필수특허(SEP) 선언 검색 가능

해당 특허에 대해 표준필수특허(SEP) 선언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전용 필드가 이제 PATENTSCOPE 에 포함됩니다.

표준필수특허(SEP)는 특정 기술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이러한 표준은 다양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로 다른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개발기구(SDO) 세 곳에서 채택한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것으로 선언된 특허는 이제 표준필수특허로 표시되어 PATENTSCOPE 의 새 탭인 “선언 표준필수특허”(Declared SEP)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추가 내용은 아래 PATENTSCOPE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web/patentscope/w/news/2025/patentscope-now-includes-standard-essential-patent-declarations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 의 4.1)

PCT 규칙 82 의 4.1(d)에 따른 통지(스페인 특허상표청)

PCT 규칙 82 의 4.1(d)에 따라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2025 년 4 월 28 일과 29 일 자국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전자통신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PCT 규칙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출원인은 동 청에 PCT 규칙 82 의 4.1(a)에 따른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제출은 면제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스페인 특허상표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oepm.es/en/sobre-OEPM/noticias-y-eventos/noticias/noticiap/Ampliacion-plazos-como-consecuencia-de-incidencia-electrica./

PCT 정보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여러 관청)

2025 년 7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해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오스트리아 특허청 ZAR

캐나다 지식재산청 EUR

이집트 특허청 CHF, EUR

유럽 특허청(EPO)..... USD, ZAR

이스라엘 특허청 EUR

일본 특허청..... USD

대한민국 특허청 CHF

변경 후 금액은 수수료표(Fee Table)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CA, EG, EP, IL, JP 및 KR) 업데이트)

취급료 (호주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2025 년 7 월 1 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호주 특허청에 AUD 로 납부되고, 이스라엘 특허청에 ILS 로 납부되며, 대한민국 특허청에 KRW 로 납부되는 취급료의 등가액이 각각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각각 AUD 377, ILS 875 및 KRW 345,000 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 (AU), (IL) 및 (KR) 업데이트)

새로운 WIPO 자료

특허동향보고서: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OHS)) 기술



WIPO 특허동향보고서 최신호는 산업안전보건이라는 필수적 분야에서의 전 세계적 특허 활동을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살펴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허출원 수천 건을 분석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혁신에서의 핵심 혁신동향, 주요 기술개발자 및 지리적 패턴을 파악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으로 피해를 입어, 약 300 만 명이 업무상 사고나 작업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4 억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비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수치는 산업안전보건에서의 혁신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 의 4% 가까이를 차지하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아래의 세 가지 주요 기술 영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 인공지능(AI), 센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사고 예측 기술
- 위험한 상황과 근로자 건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감지 및 모니터링 도구
- 첨단 개인보호장비(PPE)와 위험 완화를 위해 설계된 안전 시스템을 포함한 보호 기술

이번 보고서는 직장 안전 기술의 진화하는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기업, 혁신가에게 귀중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을 촉진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web-publications/patent-landscape-report-occupational-health-and-safety-ohs/en/index.html

참고로 WIPO 는 “특허 정보 접근을 위한 툴 개발”(Developing Tools for Access to Patent Information)이라는 개발 어젠다(Development Agenda) 프로젝트에 따라 공중보건, 식량안보,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과 같은 개발도상국 및 최저개발국의 특별 관심분야에서 특허동향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동향보고서 다른 호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series/index.jsp?id=137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출원인을 위한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아래 페이지에 출원인을 위한 ePCT 동영상 튜토리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tutorials.html

ePCT 출원에 대한 동영상 튜토리얼이 상기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ePCT 에서 직접 제출 또는 (캐나다(RO/CA), 이스라엘(RO/IL) 및 미국(RO/US) 수리관청들에 출원 시) 2 단계 제출을 통해 PCT 출원을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시연하며, 아래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docx-format.html#wipoModal4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

영어 웨비나

2025 년 4 월 15 일 및 17 일에 아래의 영어 웨비나가 제공되었습니다.

- ePCT 마스터하기(Mastering ePCT) 웨비나 시리즈: ePCT 출원(ePCT Filing)

해당 웨비나 녹화자료 및 관련 자료는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유용한 도움말

정전 및 인터넷 장애시 이용 가능한 보호장치

Q: 저의 현지 수리관청과 다른 관청들에 새로운 PCT 출원을 오늘 제출하고, 계류 중인 PCT 출원과 관련된 여러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와 현지 수리관청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와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A: 가능하면 먼저 PCT 출원이나 기타 문서를 제출하시고자 하는 관청의 웹사이트에 안내된 이용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확인해 보십시오. 관청이 이러한 내용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다면 PCT 출원인 가이드와 ePCT 의 관청 프로필에도 이용 가능한 출원제출 방법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이용 가능한 방법들이 실제 실행이 불가능하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PCT 출원을 제출하거나, 또는 해당 출원의 수리를 관할하는 다른 시간대의 다른 수리관청에 출원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출원과 관련된 많은 문서는 해당 시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사무국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이나 계류 중인 출원과 관련된 기타 모든 문서를 제때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강구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기한을 놓쳐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신청하기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상황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따라 우선권 기간 내에 새로운 국제출원 제출

수리관청이 특정 날짜에 휴무를 선언한 경우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ClosedDates.xhtml?lang=ko 참고), “다음 영업일 규칙”(파리협약 제 4 조제 C 항(3), PCT 규칙 2.4(b) 및 80.5)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청이 대민업무를 하지 않은 날에 만료된 기한은 해당 관청이나 기구가 업무를 재개하는 다음 영업일에 만료됩니다. 익일에 신규 국제출원을 제출하면 우선권 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우선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정전이나 인터넷 중단장애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를 들어 우선권 회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에서는 각 경우별 특정 상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청은 자국 국내법과의 상충사실 통보를 이유로우선권 회복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들 관청은 PCT 규칙 26 의 2.3(j)에 따라 제출된 상충사실의 통지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추가 세부사항은 PCT 뉴스레터 2025/01 호 및 2020/02 호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T 규칙에 정해진 기한 내에 계류 중인 국제출원과 관련된 문서 제출

연장이 불가능한 기한 내에 계류 중인 출원과 관련된 행위를 해야 하는데(예를 들어,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정전이나 인터넷 중단이 해당 관청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관청에서 허용되는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PCT 규칙 82 의 4.2(a)를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한을 놓친 데 대한 책임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으며, 관청의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체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것입니다. 해당 관청의 적용 가능 조건들을 포함한 이러한 통지내용은 WIPO PCT 웹페이지(https://www.wipo.int/pct/en/texts/unavailability.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당 관청이 정한 조건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출원인 측에 있는 경우, PCT 규칙 82 의 4.1 에 따라, 수리관청, 국제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 대한 행위를 하기 위한 규칙에 정해진 기한이 귀하의 거주지,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체류지에서 전자통신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명시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전이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예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었으며, 이용 가능한 대체 통신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단계, 단락 11.065A 참조).

이러한 증거는 해당 기한 만료 후 6 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이나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 해당 관청이 만족하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관청은 동 청이 정하고 공개하며(PCT 규칙 82 의 4.1(d)) 또한 국제사무국에서 공개한 조건들에 따라 증거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거제출 요건이 면제되는 이유를 언급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PCT 규칙 82 의 4 는 PCT 규칙에 정해진 기한에만 적용되며, 파리협약의 적용을 받는 우선권 기간이나 PCT 조약(제 22 조 및 제 39 조)에 정해진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우선권 기간 외 기한에 대한 책임면제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20/03 호 및 2020/05 호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조약 제 22 조 및 제 39 조)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에 대한 해결책이 관련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고(PCT 조약 제 48 조제 2 항, PCT 규칙 82 의 2.2),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은 국내법과 PCT 규칙 49.6(f) 간 상충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PCT 규칙 49.6 에 따라 출원과 관련된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참고).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해당 국내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해당 국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구체적 상황에서 지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PCT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하고, 대신 출원이나 문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모든 보호장치는 추가적인 교신이 필요하고, 모든 체약국에서 항상 허용되거나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NZ 뉴질랜드 (수수료)

ZA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수료)

미국 달러(USD)로 납부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 (여러 관청)